

2026년도 제1회 경상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 경상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직 종	담당직무	선발예정인원	근무지역	비 고
행정지원과	청원경찰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등	2명	안동	
119특수대응단	청원경찰	청사 및 시설물 방호(경비) 등	1명	포항	

※ 채용 시 근무부서(근무지역)와 직무는 채용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다.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의료 보조장비 착용 제외)으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사람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에 따른 상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라. 거주지제한(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에 따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군위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②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4지 선택형)

- 1) 시험과목 : 한국사,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각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1문항당 1분 기준

- 2) 합격결정 :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 체력시험

- 1)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시험 실시
- 2) 종 목 : 악력(100점), 배근력(100점), 윗몸일으키기(100점)
- 3) 합격결정
 - 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②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정
- 4)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악력 (kg)	남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여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여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준용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5) 측정방법

종목	측정방법
악력 (kg)	○ 측정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단위 : kg ○ 측정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 측정장비 : 배근력계 ○ 측정단위 : kg ○ 측정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장비 : 윗몸일으키기 전자식 측정기 ○ 측정단위 : 회 ○ 측정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 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1)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2) 면접평정요소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 결과를 ‘상(14~20점)’, ‘중(7~13점)’, ‘하(1~6점)’ 등급으로 구분

4) 5개 요소 각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되, 면접시험 ‘미흡’ 등급은 시험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미흡**’ 등급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서 “하”로 평정한 경우

라.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60%) + 체력(20%) + 면접(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26. 8. 12. ~ 8. 14.(3일간) (취소마감일 : 8. 19.)	9. 3. 이후	필기시험	9. 3.	9. 19.	10. 7.
		체력시험	10. 7.	10. 20.	10. 27.
		면접시험	10. 27.	11. 5.	11. 12.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1522-0660)로 문의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3)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cm×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함(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
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경상북도 내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 원서 접수 불가
- 2) 접수기간 내 기재사항 수정 가능하나(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 3)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4) 응시표는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
- 5) 제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최종 제출된 내역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6

가산점 적용

가. 필기시험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증(단증) 등급별 가산비율				비 고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무도 4단 이상 소지자	4%	무도 2·3단 소지자	2%	2개이상의 자격증(단증)이 있을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1)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경우 적용
- 2)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①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경기단체
 - ②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③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무도분야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2026. 7. 11. 기준)

구 분	단 체 명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023.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7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국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026.2.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026.7.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개)	택견보존회

나.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1)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단증)의 종류 및 자격(단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불인정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필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에서 별도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문제책을 일부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및 응시표에 답안이나 문제 내용을 옮겨 적는 행위 포함
- 사. 시험문제는 경상북도에서 자체 출제하며, 문제책은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아. 시험계획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경상북도 누리집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복지과 인재채용팀(☎054-880-4585) 및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